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개선방안

전병욱*

국문초록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에 특화된 정책보험 제도를 신설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재난 지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지원대상인 재난의 범위는 공제의 기본적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가입 대상은 성격상 유사성을 고려해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범위와 동일하게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령 등의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시행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도 재난의 발생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통한 재난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일시금을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제금의 최소 지급수준을 정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HG0403. 중소기업경영

주제어: 소상공인, 재난 지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공제금

I. 문제의 제기

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보험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에 특화된 정책보험 제도를 신설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이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법령상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대안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재난 지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 재난지원에 대한 일반적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동(同)조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서 추상적 규율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소상공인기본법상의 보호·지원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¹⁾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는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했는데, 동법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22호의2는 기금을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제22조의5(재난시의 신속 지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특히 동법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²⁾ 따

1)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상공인법 제1조).

2)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

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법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의 재난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의무를 정하는 세부적 법령이 미비한 상태에서 기금의 용도를 열거하는 수준의 소극적 입법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와 별도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재난안전법은 제7장(재난의 복구)에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제1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제2절), 재정 및 보상(제3절)에 대한 세부 조항을 마련했지만,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은 발견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³⁾.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21년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수 및 종사자수에서 각각 우리나라 경제의 95.0%⁴⁾ 및 45.8%의⁵⁾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와 같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통합적인 법령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고,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법 및 재난안전법 등의 개별 법령으로는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입법 체계를 구축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14. (생략)
- 3) 예컨대, 재난안전법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동(同)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1항 제5호는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으로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용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규정한 반면 동항의 각 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특별지원은 확인할 수 없다.

4) 7,723,867개 중 7,335,397개

5) 22,865,491명 중 10,461,890명

면서 일관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시행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재난 대비 및 지원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과 유사하게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사고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공제사유를 확대하고,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확대되는 공제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 일부 지급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을 추가하고, 추가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2024년 6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3.10.23.부터 2023.12.4.까지 입법예고했는데, 입법예고에 따른 동(同)시행령의 개정은 2023년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同)입법예고의 내용은 제3장 제4절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개선방안 중에서 <표 9>와 일부 관련되지만, 본 연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바람직한 재난지원 체계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득세법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추가적으로 취급하는 측면에서 차별성 있는 독자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II.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분석

1. 도입배경 및 근거법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던 2006년의 국회 의안심사보고서는 동(同)제도의 입법배경을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자치·상부상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일정액을 각출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회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경제적 위험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한 상호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공제제도를 마련하려는 이유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신용보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술하였다⁶⁾.

6) 이러한 입법배경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 도입되기 전인 2004년말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전체 사업체수의 97.0%인 291만개에 이르고, 종사자 수의 63.9%인 760만명을 차지하

동(同)보고서에 의하면 소기업·소상공인은 생계형 자영업자인데, 대형 사업자들에 비해 이들의 상대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폐업 등에 대비한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⁷⁾, 근로자들을 위한 유사제도와 비교 측면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즉,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기초생활 보호 제도 및 직업훈련과 같은 공적부조 체계가 마련되었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가 취약하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및 각종 민영 보험상품 등도 폐업시의 생계나 전업을 위한 재원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제1항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소기업·소상공人公제”)을 관리·운용한다.”고 규정하였다⁹⁾. 또한, 동법 제116조는 소기업·소상공人公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하고(제1항), 소기업·소상공人公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항).

동법 제117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한 소기업·소상공人公제의

고 있어서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산층 및 서민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 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도입 이전에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실업 해소를 위한 창업지원 대책이 중심이었고,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제도는 중소기업자의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금 대출과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의 지원을 위주로 한 것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재해, 부도 및 사망으로 인한 폐업이나 노령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등과 같이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경우에 본인은 물론 친인척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시키고, 생활 안정과 전업을 위한 자금 마련의 지원효과가 취약한 실정이었다.
- 8)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주가 사전에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퇴직급여의 재원을 적립해서 근로자가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으로 일정한 연령이 되면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과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으로 구분할 수 있다.
- 9) 대부분의 공제는 공제회의 내부규정에서 가입자들 간의 위험관리를 위한 기본적 목적을 규정한다(영영수 등, 2011) 반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근거법률에서 이를 규정하였다. 예컨대, 농협공제규정 제3조 제1항은 농협공제를 “회원 또는 본회가 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했고, 신협공제규정 제2조 제1항은 신협공제를 “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고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공제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한 것이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이하 “공제운용요강”)에¹⁰⁾ 의해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고,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¹¹⁾.

동법 제118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사유는 <표 1>과 같고, 공제운용요강에 의한 공제금 지급액은 기본공제금과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공제금으로 구성된다.

<표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¹²⁾ 또는 해산한 ¹³⁾ 경우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4. 만 60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¹⁴⁾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공제금의 지급방법은 일시금이 원칙이지만,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자가 만

-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공제운영방법, 절차 및 공제계약 등에 대한 사항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에 위임하고 있다.
- 11) 부금의 납부는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이루어진다. 또한,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납부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고,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다.
- 12)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 13) 법인만을 말한다.
- 14) <표 1>의 지급사유에 의한 기본공제금 중 1. 또는 2.의 지급사유에 의한 공제금을 “폐업·사망공제금”이라고 하고, 3. 또는 4.의 지급사유에 의한 공제금을 “퇴임·노령공제금”이라고 한다. 여기서 기본공제금의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은데, 여기서 “적용이율”은 적용기간이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15년간인 경우에는 “기준이율+연0.3%”이고, 이후에 적용기간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연0.05%씩 “기준이율”이 될 때까지 감소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금 중 기본공제금의 구성>

구분	부금 납부월수	
	6회 이하	7회 이상
폐업·사망공제금	납부부금	적용기간에 따른 적용이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퇴임·노령공제금	납부부금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60세 이상이고,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공제금액이¹⁵⁾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5년, 10년, 15년 또는 20년의 분할지급기간 동안에 걸쳐 매월, 매분기, 매반기 또는 매년별로 분할지급받을 수 있다¹⁶⁾.

또한, 계약자는 일반해약¹⁷⁾, 간주해약¹⁸⁾ 또는 강제해약의¹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를 해약하게 되는데, 일반해약 및 간주해약의 경우 부금 납부월수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표 2>와 같다.

<표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일반해약 및 간주해약의 경우 해약환급금

부금 납부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3회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4회-12회	90%	
13회-36회	100%	
37회-60회	100%	
61회-72회	납부부금의 100%+기준이율로 적립한 지급이자(이하 “지급이자”)의 40%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²⁰⁾
73회-120회	납부부금의 100%+지급이자의 50%	
121회-180회	납부부금의 100%+지급이자의 70%	
181회-240회	납부부금의 100%+지급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지급이자의 95%	

* 자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27조, <별표 2> 및 <별표 3>

추가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제1항은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²¹⁾. 또한, 공제운용요강에 의해 가입자가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지 않은 경우에

- 15) 미상환대출금 공제후 금액
- 16) 공제금을 분할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사망 또는 계약자가 잔여 분할공제금의 일괄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분할공제금을 일괄하여 지급한다.
- 17)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의미한다.
- 18) ①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②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③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의 계약의 해지를 의미한다.
- 19) 공제부금의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의미한다.
- 20)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한다. 또한, 부금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는 납부금액의 합계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²²⁾²³⁾.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에 대한 과세체계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에 대해서는 <표 3>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86조의3 제1항)²⁴⁾.

<표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액 = MIN(①, ②)

① 공제대상금액*×{1-(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② 공제한도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공제대상금액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대상금액
4,000만원 이하	MIN(해당 연도 공제부금 납부액,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MIN(해당 연도 공제부금 납부액, 300만원)
1억원 초과	MIN(해당 연도 공제부금 납부액, 200만원)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은 <표 4>와 같이 지급사유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2항, 조특법 제86조의3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

21)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제2호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22) 단, 납부금액의 합계액이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보다 작은 경우에는 후자의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3) 대출기간은 1년인데, 연장할 수 있다.

2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다.

〈표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대한 과세체계

구분		가입시기	
		2015년 이전* ^A	2016년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		소득공제 (MIN(연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한도)	소득공제 (MIN(연 200만원-500만원* ^B , 사업소득금액25) 한도)
지급받는 공제금 (해지일시금)* ^D	폐업 등 사유	이자소득 ²⁶⁾	퇴직소득 ^{27)*^C}
	동(同)사유 발생 전 공제계약 해지	기타소득* ^E	기타소득* ^E

*^A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과세방법 적용가능

*^B 2016년에는 연 300만원

*^C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및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납입연수(공제부금 납입월수÷12)로 함²⁸⁾.

*^D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E 단,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의 발생,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등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이자소득

* 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

〈표 4〉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해지일시금)의 15%를 원천징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한다²⁹⁾. 동(同)해지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세제상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입금·이체)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그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이 인출될 때 소득세를 납부한다(과세이연). 구체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시 납부하지 않았던 그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이연한다³⁰⁾.

25)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26)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이다.

27) 소득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해서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28)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29)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대상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그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0) 즉,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연금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의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및 〈표 4〉와 같이 조특법 제86조의3 제1항 등은 거주자가 2016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연 200만원-500만원(2016년에는 연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이하 “신규과세방식”).

이에 반해 거주자가 2015년말까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동(同)공제는 조특법 제13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소득공제의 종합한도가³¹⁾ 적용되지 않는다(이하 “종전과세방식”). 다만, 2014.12.23.자 개정 법률 제12853호의 부칙 제65조에 의해 2015년까지의 가입분이더라도 2015년말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과세방식 대신 신규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조특법 제86조의3 제3항 및 제4항은 〈표 1〉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거주자가 해당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표 4〉와 같이 가입시기에 따라 구분해서 과세방식을 규정하였다. 즉, 지급사유의 발생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³²⁾, 이 경우에도 특정사유에³³⁾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4〉의 기간별 과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³⁴⁾³⁵⁾.

31)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상 주택자금 소득공제, 조특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제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액의 주택자금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33)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의 발생,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동법시행령 제80조의3 제5항)

34) 여기서 신규과세방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공제부금 납부액이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제금 지급액의 원리금 전액에 대해 과세하도록 해서 납입시와 지급시의 이중공제를 배제한 측면에서는 종전과세방식에 비해 과세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소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 대신 최소 6%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으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종전과세방식에 비해 과세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나타내고 있다.

35) 일본은 우리나라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소규모기업공제제도를 1965년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기업공제제도는 소규모기업의 개인사업자, 공동경영자 또는 회사 등의 임원이 개인사업자의 폐업, 동(同)폐업에 수반하는 공동경영자의 퇴임, 회사 등의 해산, 임원의 질병·부상에 의한 퇴임 등의 경우에 생활안정 또는 사업재건 등을 위한 자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규모기업공제제도의 매월 납부금은 1,000엔 이상이고, 납부금은 70,000엔을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Ⅲ. 소상공인 재난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확대 적용 검토

1. 지원대상인 재난의 범위 검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확대 적용 대상인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와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동호의 각목에서 <표 5>와 같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재난”의 범위(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각 목)

재난	범위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³⁶⁾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표 5>와 같은 재난안전법에 의한 “재난”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인데, 동(同)개념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도입해서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에 적용할 경우에는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강화되는 반면 소상공인의 사업활동을 통한 재난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적 사유에 의한 일체의 피해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서 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5>는 재난의 범위를 규정한 반면 그 수준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서³⁷⁾ 소상공인의 자력구

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후에 공제금을 일괄수취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분할수취할 경우에는 잡소득으로 과세한다. 일본의 소규모기업공제제도는 상호부조의 성격과 영세사업자 지원의 성격 중 전자의 성격이 더욱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동(同)공제제도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일본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chusho.meti.go.jp)에서 인용하였다).

36) 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37) <표 5>의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관련해서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는 이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제1호) 및 “그 밖에

제가 가능한 경미한 피해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서 역시 공제의 기본적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재난”의 범위를 규정해서 실효적 구제와 함께 공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표 6>과 같이 재난안전법 제1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로 재난지원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대규모 재난”의 범위(재난안전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중앙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이와 별도로 소득세법 제58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에 해당할 경우에 소상공인에게 재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통한 재난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재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 현재의 미부과 소득세 및 미납 소득세와 함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합계액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자산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³⁸⁾ 재해손실세액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였다³⁹⁾.

이와 같이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재난”의 범위를 정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사업용 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 훼손되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同)세액공제와 별도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도입해서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제2호)로 규정했는데, 동(同)규정에 의한 피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다.

38)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39)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재난지원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제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재난지원의 대상을 전술한 “대규모 재난”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는데, 동(同)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이를 규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단, 사업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함께 신고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유인이 없는데, 이로 인해 “재난”에 해당하면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통한 재난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해손실세액공제의 해당 여부에 따라 동(同)공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세액 신고시 세부담의 실익과는 무관하게 동(同)세액공제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동(同)공제의 가입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다음 절의 분석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통한 재난지원의 대상을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13조 “대규모 재난”으로 하는 경우와 소득세법 제58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인 “재해”로 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구체적인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2. 가입 대상인 소상공인의 범위 검토

다음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통한 재난지원에서 동(同)공제의 가입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는 동(同)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하고(제1항)⁴⁰⁾, 동(同)공

40)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과 같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동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3.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4.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동(同)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이며, 이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⁴¹⁾⁴²⁾.

여기서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이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⁴³⁾,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자이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⁴⁴⁾.

여기서 소기업과 함께 법인인 소상공인의 대표자까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들이 사업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상공인의 대표자는 형식적으로는 법인으로 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본인의 개인 재산을 출연해서 법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

42)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제운용요강에 따라 공제부금을 낼 것과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해야 하는데, 이 경우 동(同)공제의 가입일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공제부금을 낸 날이 된다.

43) 구체적인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은 아래와 같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식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 수도업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8. 농업, 임업 및 어업 19. 광업 20. 담배 제조업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 건설업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8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33.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35. 부동산업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44)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그 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이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인을 설립한 개인사업자의 성격이 있는데, 이들은 사업 재기 및 폐업 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⁴⁵⁾.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통한 재난지원의 대상은 동(同)공제의 가입범위와 동일하게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하거나, 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후자의 방안은 소기업을 기본적으로 배제하면서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재난지원의 대상을 정하는 것인데, 고용 규모에 따른 양자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등을 고려한 소기업의 현실적인 고용 인원이 소상공인과 유사한 수준이고, 법인인 소상공인의 대표자를 포함하면서 개인사업자인 소기업을 재난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同)대상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파란우산공제의 확대 적용 및 소상공인 정책보험의 신설 여부 검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14호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업무들과 함께 “공제사업”을⁴⁶⁾ 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동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로 “공제사업”을⁴⁷⁾ 규정했는데, 이들 규정을 근거로 중소기업중앙회는 2013.11.25.자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해공제사업을 “파란우산공제”의 브랜드로 개시하였다.

파란우산공제의 상품은 화재공제, 기업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근로자재해공제, 재산종합공제, 간편실손화재공제, 풍수해공제 및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공제로 구성되고, 개별 공제상품의 내용 및 가입대상은 <표 7>과 같은데, 동(同)공제의 시행 취지는 시장보험료에 대비해서 10%-25% 저렴하게 공제상품을 공급하고, 사실상 보험 가입이 어려운 위험업종에 대해 인수제한을 최소화하며, 공제 사고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⁴⁸⁾.

45) 이러한 문제점은 근로자가 없는 1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더욱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46) 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47) 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48) 파란우산 손해공제 홈페이지(www.insbiz.or.kr)에서 인용하였다.

〈표 7〉 개별 공제상품의 내용 및 가입대상

공제상품	내용	가입대상
화재공제	공제의 목적물이 화재사고(벼락 포함)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로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뿐만 아니라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를 보상	상가, 공장 등의 피보험자의 재산
기업종합공제	하나의 공제증권으로 화재손해 뿐만 아니라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통합 보장	상가, 공장 등의 피보험자의 재산
영업배상책임공제	피공제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기업체의 각종 배상책임위험을 보장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각종 비용손해
근로자재해공제	근로자 재해발생으로 인한 배상액이 산재보상금(8,000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사상 배상책임을 담보	산재보상금이나 선원법상의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초과한 손해를 배상
재산종합공제	피공제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발생하는 실질적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물적 위험을 포함하여 그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및 배상책임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	건물, 기계장치, 공기구 등 피공제자의 모든 재산
간편실손화재공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뿐만 아니라 시설, 영업배상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	음식업종, 소매업종, 의원(한의원, 치과 등)
풍수해공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실손비용을 보장하고, 공제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소상공인 상가, 공장(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규제샌드박스 배상책임공제	피공제자가 제공하는 생산물·서비스·인터넷 거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	규제샌드박스 사업 참여자가 제공하는 생산물·서비스·인터넷 거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자료: 파란우산 손해공제 홈페이지(www.insbiz.or.kr)

이와 같은 파란우산공제의 목적 및 다양한 공제상품의 구성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을 위한 정책보험으로 동(同)공제를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란우산공제의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비해 매우 작아서 가입

기반이 취약하고, 개별 공제상품의 내용이 이질적이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포괄적인 재난지원을 위한 보장 기능이 부족하고, 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같은 조세혜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⁹⁾.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을 위한 정책보험으로는 파란우산공제에 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개편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들 공제들과 별도로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을 위한 정책보험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⁵⁰⁾. 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보험과 유사하게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정책보험을 신설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근거법령의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는 사적보험의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상공인 전용의 정책보험을 통해 가능한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사업상 위험을 축소시키고,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⁵¹⁾. 이러한

49) 이와 같이 파란우산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이질적 성격으로 인해 이들 공제가 별개의 시장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을 위해 후술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시행하더라도 양자 간의 중복성 문제와 함께 파란우산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50) 이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전쟁 또는 자연재해시 지역정부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개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었는데, 보험의 발달과 국가가 모든 개인의 재난·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는 법적 원리에 따라 보험의 사적 영역과 정부 지원의 공적 영역이 혼합된 영역이 발전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난 및 악천후 기금(Fonds catastrophe et intempéries, FCI)은 재난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재정지원 및 기금으로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부담금 징수 조합(URSSAF)과 자영업자 사회적 보호 위원회(conseil de la protection sociale des travailleurs indépendants, CPSTI)을 통해 제공하는데, 자영업자로서 부담금을 내는 모든 사업주는 동(同)기금의 긴급 지원 혜택을 대상이 되고, 사업용 건물이나 생산 설비 외에 거주지의 손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동(同)기금을 지원받는데 필요한 재정 및 규모 조건은 없고, 사업주의 재난과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는데, 지원한도는 2,000유로이고, 다른 지원과 중복해서 접수하되, 재난 발생 후 4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프랑스 국가사회보장청(Centre des Liaisons Europeennes et Internationales de Sécurité Sociale, Cleiss) 홈페이지(www.cleiss.fr)에서 인용하였다).

51) 공제 제도의 기본 취지는 가입자가 스스로 단체를 조직해서 상호 간의 이익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사적 보험의 방식으로 공제 제도를 적절하게 설계하면 재난 발생에 대한 실질적 구제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조합원의 가입과 공제부금의 납부를 전제로 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재난에 대해 제한 없이 공제사유를 설정해서 요건 충족시 공제금의 신속한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순수한 정부 재정지원 방식에 비해 피해 구제의 효과성을 개선시킬 수

방식은 비용 지원과는 별개로 보험의 가입 결정과 이에 따른 사후적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부여해서 재난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인데, 시행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민간보험사가 보험의 목적물과 보장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도 충분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이러한 방식의 새로운 공제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제금의 지급액이 납부액에 연계되기 때문에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 금액에 비해 지급액이 작아서 충분한 구제가 되지 못하고, 보험료 부담액에 대한 매칭 방식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재난 대비만을 위해서 소상공인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서 파란우산공제와 같이 가입자가 충분히 모집되지 않음으로써 동(同)제도를 통해 충분한 재난지원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을 위한 정책보험을 신설하는 것에 비해 이미 충분한 가입 기반을 갖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사업 영역과 공제범위를 재난 대비 및 지원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고, 정책보험의 신설에 비해 입법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및 공제운영요강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4. 소상공인 재난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확대 적용을 위한 법령 등 개선방안

이상의 분석과 같이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사업 영역과 공제범위를 재난 대비 및 지원까지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개선방안인데, 세부적 방안의 마련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지원의 대상을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13조 "대규모 재난"으로 하는 경우와 소득세법 제58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인 "재해"로 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법령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이하에서는 각각 "개선방안①" 및 "개선방안②").

먼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시행 목적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있는 것이다.

제1항은 <표 8>과 같이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⁵²⁾.

<표 8> 재난 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관련 법령 등 개선방안(시행 목적의 확대)

현행	개선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① 증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영한다. ② (생략)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① <u>있고,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u> ② (현행과 같음)

다음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표 9>와 같이 개선방안①과 개선방안②를 구분해서 재난의 발생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표 9> 재난 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관련 법령 등 개선방안 (공제금 지급사유의 확대)

현행	개선방안①	개선방안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 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 법 제1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 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 1.-4.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 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 1.-4. (현행과 같음)

5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제1항을 별도로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 9>와 같이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개정해서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까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헌법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에서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표 8>과 같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동(同)공제의 시행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개선방안①	개선방안②
〈신설〉	5.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5.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의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해손실공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
②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다음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통한 재난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 10〉과 같이 〈표 9〉의 추가적인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同)공제에 대한 〈표 4〉의 과세체계에도 불구하고 해지일시금을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서 〈표 10〉은 〈표 4〉의 과세체계 중에서 기타소득의 과세제외에 대한 것이지만 퇴직소득의 과세와 관련해서는 조특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에서 과세 사유를 〈표 9〉의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각 호와 동일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개선방안①” 또는 “개선방안②”와 같이 재난의 발생을 공제금의 지급사유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더라도 추가적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표 10〉 재난 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관련 법령 등 개선방안 (해지일시금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 제외)

현행	개선방안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7. (생략)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26. (생략) ②-⑤ (생략)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1.-17. (현행과 같음) 18. 해지일시금(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지급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19.-26.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다음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세부적 운용과 관련해서 공제운용요강 제29조 제1항은 공제사유를 <표 9>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과 사실상 동일하게 규정했는데, <표 11>과 같이 동(同)규정도 개선방안①과 개선방안②를 구분해서 재난의 발생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표 11> 재난 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관련 법령 등 개선방안(공제사유의 확대)

현행	개선방안①	개선방안②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29조(공제사유) ①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1.-4. (생략) <신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29조(공제사유) ① 1.-4. (현행과 같음) 5.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29조(공제사유) ① 1.-4. (현행과 같음) 5.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의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해손실공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
②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다음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통한 재난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 11>의 추가적인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적 해약에 의한 <표 2>의 일반 해약과 구분해서 더욱 큰 공제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표 12>와 같이 최소 지급수준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지급액은 공제운용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 재난 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관련 법령 등 개선방안
(공제금의 최소 지급수준)

현행	개선방안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30조(공제금) ① 중앙회가 지급하는 공제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제1란의 부금납부월수에 상응하여 동표 제2란에 기재된 금액, 동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표 제1란의 부금납부월수에 상응하여 동표 제3란에 기재된 금액 2. (생략) ② (생략)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30조(공제금) ① 1. <u>금액(이하 “기준공제금”이라 한다)</u> 금액, 동항 제5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공제금의 2배 이상으로 공제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2. (생략) ② (생략)

추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서 <표 13>과 같이 폐업(공제운영요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사망(동항 제2호)의 공제사유와 구분해서 추가적인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⁵³⁾⁵⁴⁾.

53) <표 13>의 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시행할 경우에는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 확대 등과 관련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용가능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54) 이번 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동법시행령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들 규정의 현행 체제상 기가입자에 대한 적용 배제 등으로 인한 시행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개선방안과 같이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시행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면서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의 발생을 포함시킬 경우에 <표 8> 내지 <표 13> 외의 입법조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동(同)법령·운영요강을 실제 개정할 경우에는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가능한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제도 개편시 필요할 수 있는 입법적·제도적 보완을 재차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표 13〉 재난 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관련 법령 등 개선방안(준비금의 추가 적립)

현행	개선방안
<p>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0조(준비금의 적립)</p> <p>① 중앙회는 장래 공제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결산기마다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3. (생략)</p> <p>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비금은 재적중인 계약에 대하여 결산기에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 공제금과 동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 공제금과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0조(준비금의 적립)</p> <p>①</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2의2. 제29조 제1항 제5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p> <p>3.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준비금은 재적중인 계약에 대하여 결산기에 제29조 제1항 제5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 공제금과 동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 공제금과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IV. 결론

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보험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에 특화된 정책보험 제도를 신설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이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법령상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대안들 중에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재난 지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지원대상인 재난의 범위는 공제의 기본적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입 대상은 성격상 유사성을 고려해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범위와 동일하게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안적 방안인 파란우산공제의 확대 시행은 보장 기능 및 정책적 유인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의 소상공인 정책보험은 불충분한 지급액 및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개편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령 등의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시행 목적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제1항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공제운용요강 제29조 제1항에도 재난의 발생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통한 재난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일시금을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통한 재난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의 최소 지급수준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지급액은 공제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공제사유와 구분해서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추가적인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입법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비교한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⁵⁾.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사업 영역과 공제범위를 재난 대비 및 지원까지 확장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용가능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는데, 이후의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 실증분석의 보충과 함께 동(同)공제를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까지 확대해서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의 정부의 가능한 재정지원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5)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적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은 현재의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혹은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에 위협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비교적 시행 초기 단계의 사회안전망 확충 과정에서 실제로 광범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대 및 강화에 주안점을 둘 필요성이 있고, 특히 자영업 종사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자영업자 가구의 각 계층의 촘촘한 구분을 통한 특화된 사회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경제 지원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현금성 지원 외에 고정비용 지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와 소비 촉진 등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DB 구축 등의 합리적인 선별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 국세청. 각연도. 『개정세법해설』. 세종: 국세청.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200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심사보고서』. 서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해외 사례』.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재만. 2011.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방향』.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서울: 보험연구원.
-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 2006.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 개선방안 연구』. 세종: 기획재정부.
- 중소기업중앙회. 2023. 『2023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 통계청. 2021.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 표한형. 2014, 12. “소상공인 범위기준 설정 및 용어 정립 검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총간사단 소상공인시장 정책토론회. 서울, 대한민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가통계포털. kosis.kr.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삼일인포마인. www.samili.com.
- 일본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www.chusho.meti.go.jp.
- 프랑스 국가사회보장청. www.cleiss.fr.

How to Rationally Revise the Mutual Aid for Small Businesses for Disaster Relief

Jun, Byung Wook*

Abstract

In order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for small enterprises, it is necessary to adopt a specific policy insurance to make up for their disaster relief. Considering such aspect, the mutual aid for small business (“MASB” hereafter) should be expanded to treat their unexpected disasters, and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plans to revise MASB as below to coincide with that policy purpose.

First, the scope of the disaster which MASB deals with should be prescribed based on either “Basic law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r the deduction from the tax amount lost by calamity in “Individual income tax law”, and the eligible beneficiaries should be unchanged from those in current MASB scheme.

Next, the disaster relief should be explicitly described in the enforcement purpose of MASB, and mutual aid payments should also be guaranteed above the base level in the outbreak of prescribed disasters.

Finally, those mutual aid payments should be exempt from individual income taxation, and additional MASB reserves should be accumulated as such payments be carried out.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Field: HG0403.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Key Words: Small Enterprise, Disaster Relief, Mutual Aid for Small
Businesses, Deduction from the Tax Amount Lost by Calamity,
Mutual Aid Payments